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 회)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부에 일반 사법기관과의 협조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국방 분야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부 내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국방부에 군무원 채용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4급 또는 5급 1명, 7급 1명)을 2026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고, 국방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유무인복합체계과의 과장 직위를 영관급장교로 보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4급으로 보하도록 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4급 1명)은 국방부의 정원 1명(4급 1명)을 한시정원으로 전환하여 활용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4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국방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본문 중 “국방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국방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48명”을 “47명”으로 한다.

제29조의7제2항 중 “영관급장교로”를 “4급으로”로 한다.

제30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군무원 채용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3월 31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방부에 둔다.

별표 1 중 총계 “672”를 “674”로 하고, 일반직 계 “664”를 “666”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642”를 “644”로 한다.

별표 3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유무인복합체계과(존속기한: 2025년 7월 25일)

총계	3
일반직 계	3
4급 이하	3

별표 4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30조제2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6년 3월 31일)

총계	2
일반직 계	2
4급 또는 5급 이하	2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illegible]

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 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③・④ (생 략) 제29조의7(유무인복합체계과) ① (생 략) ② 유무인복합체계과에 과장 1 명을 두며, 과장은 <u>영관급장교</u> <u>로</u> 보한다. ③ ~ ⑤ (생 략) 제30조(한시정원) ① (생 략) <u><신 설></u> ③ (생 략)	----- ----- ----- ----- ----- -----. ③・④ (현행과 같음) 제29조의7(유무인복합체계과) ① (현행과 같음) ② ----- ----- <u>4급으로</u> -----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0조(한시정원) ① (현행과 같 음) ② <u>군무원 채용 관련 업무를 수 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 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 조제1항에 따라 2026년 3월 31 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 을 국방부에 둔다.</u> ③ (현행과 같음)
---	---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1]

국방부 공무원(군인제외) 정원표(제25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672</u>	<u>674</u>	+2
•	•	•	
•	•	•	
일반직 계	<u>664</u>	<u>666</u>	+2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642</u>	<u>644</u>	+2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88